

「평창군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년 3월 25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5년 4월 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5년 4월 7일 상정 ·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가족복지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공공형 실내놀이터, 장난감도서관 등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 문화시설을 시설별 목적 및 규모, 설치지역과 이용대상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 · 운영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명 변경
- 군수의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(안 제3조)
- 시설별 운영 규칙 별도 마련에 대한 내용 신설(안 제7조)
- 이용료 등에 대한 규칙 위임사항 신설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3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수정가결」

7. 수정안 요지

○ 안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가족
5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가족
6.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3세 미만인 다자녀 가족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.

2. 평창군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.

3. 평창군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
4. 평창군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

[붙임 1]

평창군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의 안 번 호 | 402호 관련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

제안연월일 : 2025. 3. 25.
제 안 자 : 조례특위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에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그 감면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감면 조항을 신설함.

2. 수정내용

- 이용료 등(안 제8조제2항)

평창군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안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가족
5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가족
6.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3세 미만인 다자녀 가족

[붙임 2]

수정안 대비표

| 개정안 | 수정안 |
|--|---|
| <p>제8조(이용료 등) 군수는 놀이문화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 또는 연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료 또는 연회비는 50,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<u>< 신설 ></u></p> | <p>제8조(이용료 등) ① (현행과 같음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가족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가족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3세 미만인 다자녀 가족 |

「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
- 제안일자 : 2025. 3. 25.
- 회부일자 : 2025. 4. 1.
- 상정일자 : 2024. 4. 7.

2. 제안이유

- 공공형 실내놀이터, 장난감도서관 등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문화시설을 시설별 목적 및 규모, 설치지역과 이용대상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명 변경
 - (기존)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 - (변경) 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군수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(안 제3조)
- 시설별 운영 규칙 별도 마련에 대한 내용 신설(안 제7조)
- 이용료 등에 대한 규칙 위임사항 신설(안 제8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복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하며, 제53조에서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전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.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고, 놀이문화 시설 운영을 규칙에 위임하여 유연성을 높이며, 이용료·운영 규칙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놀이문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2조(정의)에서 놀이문화시설, 어린이, 보호자 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였음.
- 안 제3조(놀이문화시설 조성 등)에서 군수의 시설 조성 및 운영 관련 행정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7조(이용시간 등)에서 시설별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 운영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전예약제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.
- 안 제8조(이용료 등)에서 이용료 또는 연회비의 상한을 50,000원 이하로 설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 내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시설 운영 및 이용자 보호·안전을 고려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,
- 「지방자치법」 제17조제2항에서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, 장난감도서관의 연회비는 장난감도서관

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사용료 성격으로서 주민 간 형평성에 맞게 정수하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할 수 있고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중 유료시설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음.

다만,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정하는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핵심적인 사항이고 군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규정시에는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□ 아동복지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~ ⑤ (생략)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·오락 시설, 교통시설,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의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영유아보육법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~ ④ (생략)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402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25. 3. 25.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공공형 실내놀이터, 장난감도서관 등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문화시설을 시설별 목적 및 규모, 설치지역과 이용대상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변경

- (기존)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(변경) 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정비 (안 제1조~제2조)

다. 시설별 운영 규칙 별도 마련에 대한 내용 신설 (안 제7조)

- 놀이문화시설 운영사항을 시설의 목적 및 규모, 설치지역과 이용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라. 이용료 등에 대한 규칙 위임사항 신설 (안 제8조)

- 군민 우대 및 회원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료 또는 연회비는 50,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2025년 예산에 2.8억원 반영되었음

다. 합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타

1) 입법예고(2025. 1. 16.~2025. 2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– 평창군 공고 제2025-96호, 가족복지과-2553(2025. 1. 16.)호

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1961(2025. 2. 3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예산과-1961(2025. 2. 3.)호]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2274(2025. 1. 15.)호]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2802(2025. 2. 18.)호]

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 [기획예산과-4300(2025. 3. 17.)호]

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놀이문화시설”이란 어린이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,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활동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설치 또는 관리 · 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어린이”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3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후견인, 그 밖에 어린이를 사실상 보호 · 양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놀이문화시설 조성 등) ① 군수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문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.

-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· 운영되는 놀이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

가 고시한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놀이문화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제공
2. 어린이의 연령별 성장·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및 놀이기구 제공
3.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

제5조(의견수렴) 군수는 놀이문화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어린이 및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.

제6조(이용대상) 놀이문화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어린이와 그 보호자
2. 평창군에 소재한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시설. 다만,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.

제7조(이용시간 등) ① 놀이문화시설의 개관 및 휴관, 이용시간 등은 시설의 목적, 설치지역 및 이용 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놀이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이용료 등) 군수는 놀이문화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 또는 연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료 또는 연회비는 50,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이용 및 입장의 제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어린이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
3. 위험물이나 악취·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
4.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. 다만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.
5.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 및 범죄예방,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0조(이용자의 의무) ① 이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시설 운영 규정을 지켜야 한다.

- ② 이용자는 놀이문화시설에 설치된 기구 및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설물 관리) ① 군수는 놀이문화시설에 설치된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12조(위탁운영) ① 군수는 놀이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

수 있으며, 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 ·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3조(운영지원)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놀이문화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인력 · 장비 ·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놀이문화시설을 운영 및 관리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군수와 체결한 위 · 수탁 협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기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.

④ 수탁자는 위 · 수탁 협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협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5조(지도 · 점검 등)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

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6조(위탁의 취소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2. 수탁자가 위·수탁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
3.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아동복지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(중략)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□ 영유아보육법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비용주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발생요인

- 세입 : 놀이문화시설 이용료 또는 연회비 징수
- 세출 : 놀이문화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

나. 관련조문 : 제8조(이용료 등), 제13조(운영지원)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어린이실내놀이터 2개소, 장난감도서관 1개소 위탁 운영
- 실내놀이터 무료 운영,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징수 (※세외수입 처리)

나. 추계 결과(연간)

○ 세입

| 구분 | 산출기초 | 금액(천원) | 비고(인원산출 기준) |
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계 | | 7,190 | |
| 장난감도서관 | 개인 | 20,000원×317명 | 6,340 영유아 인구의 50% |
| 연회비 | 단체 | 50,000원×17개소 | 850 어린이집 및 유치원 70% |

※ 연회비 확정 및 감면 규정은 별도로 정함

○ 세출

| 구분 | 산출기초 | 금액(천원) | 비고 |
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계 | | 385,000 | |
| 어린이 | 평창 | 인건비(6명) 및 운영비 | 166,000 정규 3, 기간제 3 |
| 실내놀이터 | 진부 | 인건비(4명) 및 운영비 | 114,000 정규 3, 기간제 1 |
| 장난감도서관 | | 인건비(3명) 및 운영비 | 105,000 정규 2, 기간제 1 |

다. 재원조달 방안 : 자체재원, 일부 의존재원(교육발전특구예산) 활용

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1차년도 (2025년) | 2차년도 (2026년) | 3차년도 (2027년) | 4차년도 (2028년) | 5차년도 (2029년) | 계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세 입 | 4,800 | 7,190 | 7,500 | 7,500 | 7,500 | 34,490 |
|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| 4,800 | 7,190 | 7,500 | 7,500 | 7,500 | 34,490 |
| 세 출 | 350,000 | 400,000 | 421,000 | 452,000 | 475,000 | 2,098,000 |
| 실내놀이터 위탁금 | 280,000 | 295,000 | 310,000 | 335,000 | 352,000 | 1,572,000 |
| 장난감도서관 위탁금 | 70,000 | 105,000 | 111,000 | 117,000 | 123,000 | 526,000 |
| 재원 조달 | 350,000 | 400,000 | 421,000 | 452,000 | 475,000 | 2,098,000 |
| 의존 재원 | 소 계 | 70,000 | 105,000 | | | 175,000 |
| | 보조금 | | | | | |
| | 지방교부세 | | | | | |
| | 특별교부금 | 70,000 | 105,000 | | | 175,000 |
| 자체 수입 | 소 계 | 280,000 | 295,000 | 421,000 | 452,000 | 1,923,000 |
| | 지방세(군비) | 280,000 | 295,000 | 421,000 | 452,000 | 1,923,000 |

3. 작성자

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| 평창군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장 이정은 |
| 연락처 | (033) 330 - 2124 |